

## ‘업무상 자살방조’에 관한 독일 형법전 제217조의 위헌성 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정다운

### 1. 들어가는 말

지난 2월 2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는 ‘업무상 자살방조(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der Selbsttötung)’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sup>1)</sup> 동조는 2015년 11월 6일, ‘업무상 자살방조의 처벌을 위한 법률안’<sup>2)</sup>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형법전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독일 형법전에는 처음으로 자살방조에 대해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법률안은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CDU/CSU), 사회민주당(SPD), 좌파당(Die Linke), 동맹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에 속한 2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는데,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연방의회에서 자살방조와 관련된 토론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예민한 주제이다 보니 초당파적으로(fraktionsübergreifend) 이루어지는 예외적 양상을 보였다.<sup>3)</sup> 또한 이 법률안 외에도 각기 다른 내용의 3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였는데,<sup>4)</sup> 전체 법률안들을 두고 연방의회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sup>5)</sup>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1) BVerfG, Urteil des Zweiten Senats vom 26. Februar 2020 - 2 BvR 2347/15 -, Rn. (1-343), [http://www.bverfg.de/e/rs20200226\\_2bvr234715.html](http://www.bverfg.de/e/rs20200226_2bvr234715.html).

2)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rafbarkeit der geschäftsmäßigen Förderung der Selbsttötung v. 01.07.2015, BT-Drs. 18/5373.

3) Deutscher Bundestag, Geschäftsmäßige Hilfe zum Suizid wird bestraft, 06.11.2015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5/kw45\\_de\\_sterbebegleitung-392450](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5/kw45_de_sterbebegleitung-392450), 최종검색일: 2020.04.01.).

4)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r ärztlich begleiteten Lebensbeendigung(Suizidhilfegesetz) v. 30.06.2015, BT-Drs. 18/5374; 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Straffreiheit der Hilfe zur Selbsttötung v. 30.06.2015, BT-Drs. 18/5375; 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Strafbarkeit der Teilnahme an der Selbsttötung v. 30.06.2015, BT-Drs. 18/5376.

5) Deutscher Bundestag, Wichtige Beschlüsse des Jahres 2015(<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

제정된 형법전 제217조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여러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위헌을 선언하였고, 결국 규정은 제정 4년여 만에 무효가 되고 말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독일 형법전 제217조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 후, 이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해당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독일 각계의 반응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사진 1: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모습>6)

## 2. 형법전 제217조

### (1) 내용

독일 형법전에는 자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로써 자살은 형법상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자살이 정범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에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 자살방조와 관련한 형법 규

---

archiv/2015/kw52-hoehepunkte-2015-399824, 최종검색일: 2020.04.01.).  
6) Der Spiegel, Regulierung ja, Verbot nein, 26.02.2020(<https://www.spiegel.de/panorama/justiz/sterbehilfe-nach-dem-urteil-regulierung-ja-verbot-nein-a-433ce4c1-f9da-41ff-94c6-7e07ab019fc4>, 최종검색일: 2020.04.01.).

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국인 스위스의 영향 아래에 2000년대 중후반, 독일 내에 이른바 ‘임종(臨終)지원(Sterbehilfe)’<sup>7)</sup> 단체들인 ‘DIGNITAS-Deutschland’, ‘Sterbehilfe Deutschland’가 설립되면서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살방조의 규율 필요성과 그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고,<sup>8)</sup> 마침내 앞서 설명한 대로 2015년 말,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가들의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전 제217조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형법전 제217조는 “타인의 자살을 방조할 의도로, 업무상 자살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마련해 주거나,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제1항<sup>9)</sup>과 “업무상 행하지 않고 제1항의 타인과 친족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2항<sup>10)</sup>으로 구성되어, 처벌되는 자살방조와 처벌되지 않는 자살방조를 구별하고 있다. 즉 형법전 제217조가 제정되기 전부터 독일 사회 내에서 공공연히 인정됐던 친족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개별적 자살방조는 업무상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허용되는 것으로 하되, 그 외의 임종지원 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상의 자살방조는 처벌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규정이 임종지원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의 자살방조 활동을 가리키기 위해 선택한 ‘업무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정 전후로 계속 제기되었다. ‘업무상

7) 독일에서는 안락사라는 용어를 기피하고 임종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나치 시대에 장애인과 유대인을 대량학살하면서 이를 안락사라 지칭했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국내 문헌에서 ‘Sterbehilfe’를 안락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임종지원이라 번역한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주호노,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경희법학 48권 제1호, 2013, 471면).

8) Hilgendorf, Sterbehilfe heute, MedR 2018, 36: 733.

9) 자살의 기회를 제공하거나(gewähren) 마련하는(verschaffen) 것은 자살을 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쉽게 만드는 외부 조건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독극물을 전달하거나 자살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제공’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외부 조건들을 단순히 허용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마련’은 외부 조건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가지고 있던 독극물을 주는 것은 제공, 독극물을 사 오거나 제조해서 주는 것은 마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살의 기회를 알선하는(vermitteln) 것은 그 기회를 제공하거나 마련해주는 자와 자살을 원하는 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을 뜻한다(Oglakcioglu, in: BeckOK StGB, Stand: 01.02.2020, Art. 217 Rn. 21, 23).

10) 친족의 개념은 형법전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겐 직계 혈족 및 인척, 배우자, 생애동반자(Lebenspartner), 약혼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생애동반자, 배우자 또는 생애동반자의 형제자매, 양부모 및 양자가 포함된다. 친밀한 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인간관계로, 친족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연대감과 유사한 감정이 형성된 관계를 뜻하며, 연인관계, 친구관계, 생애동반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Oglakcioglu, in: BeckOK StGB, Stand: 01.02.2020, Art. 217 Rn. 39).

자살방조의 처벌을 위한 법률안’은 ‘업무상’의 의미가 ‘상업적(kommerziell)’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전제로 하는 행위들(auf Wiederholung angelegte Handlungen)’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sup>11)</sup> 문언상 표현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완화의학, 호스피스의학 분야 의사들의 업무상 행위들이 금지된 자살방조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다.<sup>12)</sup>

## (2) 의의

‘업무상 자살방조의 처벌을 위한 법률안’은, 형법전 제217조의 취지가 독일 사회 내에서 자살을 위한 조력이 건강 관련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고 한다.<sup>13)</sup> 즉 여러 임종지원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을 통해 ‘조력자살(assistierter Suizid)’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적응효과(Gewöhnungseffekt)가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상 행해지는 자살방조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4)</sup>

## 3.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요 내용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법전 제217조와 관련하여 제기된 4개의 헌법소원들을 병합하여 판결을 내렸는데,<sup>15)</sup> 임종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맞고 싶

---

11)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rafbarkeit der geschäftsmäßigen Förderung der Selbsttötung v. 01.07.2015, BT-Drs. 18/5373, S. 2.

12) Hilgendorf, Sterbehilfe heute, MedR 2018, 36: 733.

13)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rafbarkeit der geschäftsmäßigen Förderung der Selbsttötung v. 01.07.2015, BT-Drs. 18/5373, S. 2.

14)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rafbarkeit der geschäftsmäßigen Förderung der Selbsttötung v. 01.07.2015, BT-Drs. 18/5373, S. 2.

15) 이하에서는 판결문의 ‘결정이유(Begründetheit)’ 부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BVerfG, Urteil des Zweiten Senats vom 26. Februar 2020 - 2 BvR 2347/15 -, Rn. (200-342), [http://www.bverfg.de/e/rs20200226\\_2bvr234715.html](http://www.bverfg.de/e/rs20200226_2bvr234715.html).

어 하는 환자들, 독일과 스위스 소재의 일부 임종지원 단체들, 완화의학과 호스피스의학 분야의 의사들, 임종지원 관련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1)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형법전 제217조가 임종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죽기를 희망하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Recht auf selbstbestimmtes Sterben)’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법전 제217조가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주성(persönliche Autonomie)’의 표현으로서 일반적 인격권(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기본법 제2조 제1항<sup>16)</sup> 및 기본법 제1조 1항<sup>17)</sup>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살할 자유(Freiheit) 또한 포함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자기 삶의 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에 따라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자주적인 자기결정(autonome Selbstbestimmung)’ 행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국가와 사회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다른 근거나 정당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는 자살에 관한 결정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자 다른 결정들과는 달리 인간의 정체성(Identität)과 개성(Individualität)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자살할 자유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살을 조력할 제3자를 찾을 자유, 또 조력이 제공되는 한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살을 원하는 자들이 형법전 제217조의 직접적 수범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 규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도 임종지원 단체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형법전 제217조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

16) 기본법 제2조 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17)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침해는 개인의 정체성, 개성을 위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에 부여되는 실존적(existenziell) 의미를 고려할 때 특별히 중대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엄격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그 침해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결국 그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먼저 입법자가 사회에서 조력자살이 삶을 마감하는 정상적 형태로 여겨지는 것을 막아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다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형법전 제217조의 규율 목적은 정당(legitim)하다고 보았다. 수단의 적합성(Geeignetheit)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많은 행위를 형벌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적어도 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법익보호(Rechtsguterschutz)를 강제한다는 면에서 효과가 인정되는데, 형법전 제217조는 형벌규범(Strafnorm)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형법상의 처벌이 아닌 이보다 침해가 덜한 대안적 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경험적인 조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의도한 규율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법전 제217조의 수단이 필요한지(erforderlich)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볼 때, 형법전 제217조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제한(Einschränkung)과 이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 수준의 균형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는 앞서 설명한 이 권리에 부여되는 실존적 의미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형법전 제217조를 통해 자살할 권리가 사실상(faktisch) 완전히 공동화되며, 이로써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기되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동조항은 이 권리의 실존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아 그 제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형법전 제217조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는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자살조력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2) 임종지원 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법전 제217조가 임종지원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의 기본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형법전 제217조는 스스로 자살을 결정한 사람들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규정의 직접적 규범수범자인 이들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무효가 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자살조력을 제공하는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의 기본권들, 특히 기본법 제12조 제1항<sup>18)</sup>의 ‘직업의 자유(Berufsfreiheit)’와 보조적으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allgemeine Handlungsfreiheit)’가 기능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살 결정은 단순히 객관적 관점에서 제3자가 자살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하고, 중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적 조건에만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제3자에 의한 자살조력이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상태라는 조건에도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자살할 권리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의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 또한 보장하여 자살조력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데, 형법전 제217조는 이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단이다.

## (3) 입법자의 자살방조 규율에 대한 지침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법전 제217조에 대한 무효 선언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입법자에 의한 자살조력 규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무효 선언에 의해 임종지원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의 자살조력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들의 업무상 자살방조 행위를 내용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그 규율은 인간을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고 자기를

---

18) 기본법 제12조 ①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소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발현하는 ‘정신적-도덕적 존재(geistig-sittliches Wesen)’로 간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침을 부여하였다. 덧붙여, 이를 위해 입법자에게 다양한 규율 방법들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자살조력 제공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허가유보(Erlaubnisvorbehalt)에 대해 규정하는 것, 특별히 위험한 형태의 자살조력은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규율이 형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위반에 대해 형법상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 (4)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

독일에는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직업법(Berufsrecht)으로 연방의사회(Bundesärztekammer)가 제시한 ‘(표준)직업규칙((Muster)-Berufsordnung)’<sup>19)</sup>이 존재하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직업규칙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자기결정에 의해 제3자의 조력을 받아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그 권리의 발현과 실현을 위해 ‘사실상의 충분한 가능성(faktisch hinreichender Raum)’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방의사회 직업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의 의사(Wille)를 존중하면서 지원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들의 촉탁에 의해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의사는 자살을 도와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사조력자살(ärztlich assistierter Suizid)’이 금지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상 이 권리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약사의 직업법과 마취제법 또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다수의 관련 법령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살조력에 대한 의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을 확실히 밝혔다.

---

19) (Muster-)Berufsordnung für die in Deutschland tätigen Ärztinnen und Ärzte - MBO-Ä 1997 - in der Fassung der Beschlüsse des 121. Deutschen Ärztetages 2018 in Erfurt geändert durch Beschluss des Vorstandes der Bundesärztekammer am 14.12.2018. 이는 연방의사회에 의해 표준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각 연방주의 의사회가 직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4. 각계의 반응

2월 26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의사회, ‘독일 변호사협회(Deutscher Anwaltverein)’ 등 각계에서 형법전 제217조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서(Stellungnahme)를 제출하였고 자살방조 규율에 대한 사회의 관심 또한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무효 선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판결 선고 직후 연방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우선 판결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sup>20)</sup> 이후 3월 11일, 연방법무부장관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는 자살방조에 대한 규율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 없고 연방의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21)</sup> 종교계와 사회봉사단체(Diakonie)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특히 ‘독일 주교회의(Deutsche Bischofskonferenz)’의 회장과 ‘독일 개신교 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의 의장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임종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노인과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질까봐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22)</sup> ‘독일 완화의학재단(Deutsche Palliativ-Stiftung)’ 또한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자살을 쉽게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서비스의 한 유형인 것처럼 여겨질 것이고 재단은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 없이도 고통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up>23)</sup>

---

20) ZDF heute, Bundesregierung will Urteil prüfen, 26.02.2020(<https://www.zdf.de/nachrichten/heute/sterbehilfe-bundesregierung-will-urteil-pruefen-100.html>, 최종검색일: 2020.04.01.).

21) Deutscher Bundestag, Regelung zu Sterbehilfe, 11.03.2020(<https://www.bundestag.de/presse/hib/686980-686980>, 최종검색일: 2020.04.01.).

22) FAZ, „Ein Einschnitt in unsere Kultur“, 26.02.2020(<https://www.faz.net/aktuell/politik/inland/kirchen-zu-sterbehilfe-urteil-besorgnis-ueber-die-entscheidung-16652360.html>, 최종검색일: 2020.04.01.).

23) Welt, Verfassungsgericht sieht Recht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26. 02. 2020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06140365/Sterbehilfe-Verfassungsgericht-sieht-Recht-auf-selbstbestimmtes-Sterben.html>, 최종검색일: 2020.04.01.).

## 5. 나가는 말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독일 사회는 임종지원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에 대한 규율을 두고 다시 토론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입법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자살조력이 사회 내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규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부담하게 되었고, 연방의사회 또한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했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sup>24)</sup>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과 환자들이 자살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을 인지하여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끝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적 가치를 매우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하며 형법전 제21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입법 논의의 첫 단계에 있지만 임종지원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의 자살조력 행위가 금지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독일 사회가 자살방조의 규율과 관련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낼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24) Norbert Arnold, Geschäftsmäßige Suizidbeihilfe. Was folgt aus dem BVerfG-Urteil?, 09.03.2020(<https://www.kas.de/de/kurzum/detail/-/content/geschaeftsmaessige-suizidbeihilfe-was-folgt-aus-dem-bverfg-urteil>, 최종검색일: 2020.04.01.).